

대통령령 제00000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법 제20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성능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”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9호,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난연재료,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9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①~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법 제20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성능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”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9호,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난연재료,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를 말한다.